

2019년 10월 돼지구제역백신 보강접종이 실시됩니다.



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**과태료 최대 1천만원** 부과 가능합니다.

(위반 횟수별 과태료 1회 500만원 / 2회 750만원 / 3회 1,000만원)

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**살처분 보상금이 전액 감액**됩니다.

접종 대상

- '19년 구제역 발생시·군(충북 충주, 경기 안성)
- '19년 구제역 NSP항체 검출농가(전남 순천)
- '19년 백신접종 항체양성률 미흡농가(전국)
- '16년 이후 돼지 과거발생 밀집단지(충남 홍성, 충남 논산, 전북 김제)
- 접경지역(경기: 양주, 고양, 동두천, 포천 / 강원: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)

접종 기간

- '19. 10. 21(월) ~ 11. 20(수), 1개월간

접종 백신

- O+A형 백신
※ 구제역 백신구입: (해당농가) 시·군에서 일괄 배부, 국비 70% 지방비 30%

접종 방법

- 농가별 전담공무원 입회하여 접종여부 확인
 - 소규모 농가(1,000두 미만): 공수의 등 포함한 접종반 구성하여 접종지원
 - 전업 농가(1,000두 이상): 자체접종

백신접종 전·후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합니다

- 접종 전** 백신 접종반은 농장 출입 시 방역복, 장화 및 장갑을 착용하고 1농장/1회 사용 원칙 준수
- 접종 시** 백신접종 요령 준수, 주사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
- 접종완료 후** 접종 후 인력·차량·사용물품에 대한 세척·소독 실시 철저

모니터링

- 보강접종 4주 후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실시
- 모니터링 검사결과 **항체 기준치(번식돈 60%, 육성돈/비육돈 30%) 미만 농가의 경우 특별관리* 지정**

* 특별관리: 과태료 부과, 재접종 명령(자부담 50%), 항체가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 항체검사등

제품별 용법·용량을 '반드시 준수'하여 올바르게 접종합시다.



1차 접종 8주령

2차 접종 1차 접종 4주후

보강접종 매 6개월 마다

접종 용량 마리당 2ml

※ 반드시 제품별 접종방법을 확인하여 접종



1. 백신은 반드시 **2~8°C에서 냉장보관**

* 백신이 얼거나 오랫동안 외부에 방치될 경우 백신 성분이 손상되어 효능이 저하 될 수 있음

2. 냉장상태에 보관중인 백신을 접종을 위해 꺼낸 후에는 되도록 **빠른 시간 내에** 사용합니다.

* 항온수조 사용시 열판에 의한 성분 손상, 수조의 물에 뚜껑부분이 오염될 가능성 있어 사용 자제

3. 접종 전, 병을 천천히 위·아래로 **흔들어** 고르게 섞어줍니다.

4. 적정 접종 용량이 근육 내로 완전히 주입될 수 있도록 **천천히 주입**합니다.

5. 보강접종 시 **누락개체(임신, 허약)는 반드시 추가접종** 실시



구제역·AI 의심축 발생시 신고전화(국번없이)

1588-9060(농림축산검역본부), 1588-4060(지자체)